

## 교원 성 범죄 예방 및 발생시 처리 철저

- 성 범죄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인권 등에 유의하여 해당 교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

※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1조, 「사립학교법」 제64조 등에 의하여 총장 또는 임면권자는 징계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함

- ☞ 대학에서 교원 징계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총장 또는 임면권자 등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음

※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1조, 「사립학교법」 제54조 등

- 성 범죄와 관련하여 직위 해제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교원을 직위 해제 하여 학생들과 격리 조치

※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3조의3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5조의3, 「사립학교법」 제64조 등에 의거 징계 의결 요구, 형사 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 가능

- 아울러, 성 범죄로 수사 기관의 수사만 받게 되어도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 중에 있음

- 성 범죄 등 교원의 징계 사유 발생 시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관 또는 학칙 등을 개정하고,

- 필요 시 피해 학생 등의 가해자에 대한 고소 여부를 확인하여 미고소된 경우 학교가 직접 고발 또는 피해 학생이 고소할 수 있도록 안내 조치

- 성 희롱 등 예방 교육 철저, 피해 학생 보호 조치, 학생 수업권 보호 조치, 피해 학생 보호 및 수업권 보장 조치 내용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도록 기 요청된,

- 교내 성 범죄 피해 학생 보호 및 수업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(대학 학사평가과-2081, '14. 3. 14.) 방안 수립 및 시행 철저

## 참고

### 교내 성 범죄 피해 학생 보호 및 수업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요청 (대학학사평가과-2081, '14. 3. 14.)

#### □ 성 희롱 등 예방 교육 철저

- 주기적으로 교직원 및 학생을 상대로 성 희롱 등 예방 교육을 실시

#### □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등

- 사안 발생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격리
-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등 구제 조치 시행
- 피해 학생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철저 관리

#### □ 학생 수업권 보호 조치

- 사안 발생 즉시 해당 교원 수업 배제
- 수강 과목 변경, 별도 분반 마련 및 특별 강사 배정 등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업을 기피할 수 있는 제도 마련
- ※ 피해 학생이 졸업 시까지 가해자의 수업을 수강하지 않고도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
- 가해 교원이 불가피하게 강의를 개설해야 할 경우 가능한 선택 과목을 배정하여 학생들이 해당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

#### □ 피해 학생 보호 및 수업권 보장 조치 내용을 학생들에게 안내

-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마련한 매뉴얼을 적극 안내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.